

**찾아가서 도와주는 2020년 경기도 기술닥터사업
기술닥터 유공자 및 표창 계획 공고**

2020년 기술닥터사업에 참여한 협약기관 및 우수 기술닥터(지원인력)에 대한 사기진작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

□ 표창개요

○ 훈 격 : 경기도지사

○ 표창대상 : 8(기관 2, 민간인 6)

- 기 관 : 2개(협약기관 91개 중 2개 기관)

- 기술지원인력 : 5명(기술닥터 전문인력)

※ 표창 대상 기관과 기술지원인력 소속기관은 겹치지 않음

- 사업 유 공 자 : 1명(주관기관)

○ 공 적 : 2020년 기술닥터사업 운영 및 기술애로 해결 지원 유공

□ 표창근거

○ 경기도 포상 조례 제5조(표창장)

○ 경기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2조(포상시기 및 종류) 제3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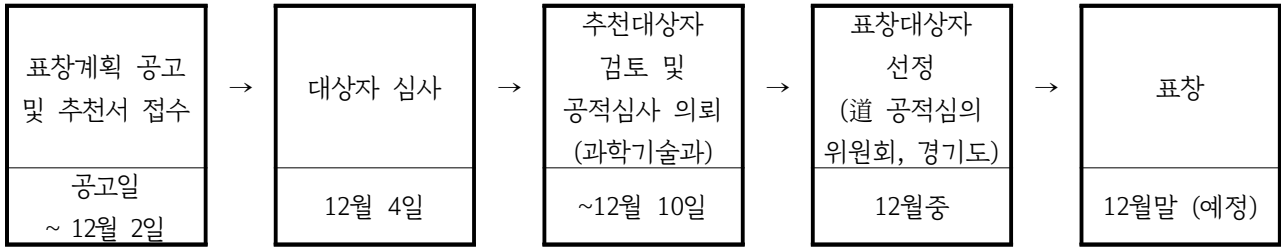
○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제23조(포상)

□ 대상자 선발 기준 및 절차

○ 대상자 선발 기준

- 2020년 기술닥터사업 운영 및 중소기업 기술애로 해결 지원에 크게 기여한 유공 기관 및 민간인에 대한 시상

○ 대상자 선발 절차(안)



○ 추천기준(경기테크노파크)

- 기술닥터사업의 참여도 및 기여도, 해피콜을 통한 만족도, 기술지원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대상자 추천

□ 추천제한 및 제외대상

-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1년, 민간인 3년 이내에 다시 도지사표창을 받은 자
- 2년 이내의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(기관)
- 해당공적 3년 미만인 자(특별한 공적 제외)
- 최근 3년 이내 도지사 표창이상 수상자
-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은 자
-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,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
- 기타 세부내용은 정부포상 민간인 제외대상자와 동일

□ 서류 제출

- 추천서 및 공적조서 제출 기한 : 2020. 12. 02(수) 18:00까지
- 접수방법 : 우편/방문접수 및 이메일(tdoctor@gtp.or.kr) 접수
- 접수처 :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(재)경기테크노파크 4동 130호
(기술닥터사무국)※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제출서류 : 공적조서 1부, 성공사례 1부 끝.

[별첨]

1. 경기도 포상 조례 제5조(표창장)

제5조(표창장 <개정 2011.1.10.>)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.

1. **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**
2. 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
3.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양양에 솔선수범한 경우
4.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[신설 2011.1.10.]

2. 경기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2조(포상시기 및 종류) 제3항

제2조(포상시기 및 종류)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.

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.

1. 자랑스런공무원표창 : 월 1회
2. 모범공무원표창 : 연 1회
3.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상 : 연 1회
4. 선행도민표창 : 월 1회
5. 경기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민상 : 연 1회

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.

1. 순직공무원표창
2. 도정시책사업표창
3. **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**
4.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
3.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제23조(포상)

제23조(포상) **도지사는 연구개발·인력양성·신기술보급 등 지역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.**